

긴급공고 사유서

1. 공 사 명 :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공사

2. 목 적

주민이 소통하고 쉴수 있는 작은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량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3. 위 치 : 마장동 450-65(동명초교 뒤) 등 4개소

4. 공사개요

○ 기 간: 착공일로부터 90일

○ 공사내용

- 마장동 460-65(동명초교뒤): 목재데크, 데크계단, 원형파고라, 등의자 등
- 사근동 16-46: 플랜터, 파고라, 평의자 등
- 성수1가1동(구민체육센터): 석가산, 목재데크, 파고라, 평의자, 앉음벽 등
- 성수2가3동(변전소앞): 파고라, 평의자, 안전램프, 핸드레일 등

○ 공사금액: 330,630천 원(도급비 198,570, 관급비 132,060)

5. 긴급공고 사유

본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과 대상지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속히 공사를 추진코자 긴급으로 발주코자 함.

6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4항.

2015. 7.

공원녹지과장 권 세 동 (인)